

서울특별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의 안 변 호	1329
------------	------

2020. 03. 06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1. 제안경위

- 2020. 2. 5. 서울특별시시장 제출 (2020. 2. 12. 회부)

2. 제안이유

-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통일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하여 승강기 사고 등으로 인한 위해(危害)로부터 승강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생활용품 중 승강기 부품의 안전인증 등에 관한 사항들을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에 관한 사항들로 통합하여 규정하고, 승강기에 대해서도 안전인증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전부개정(2019. 3. 28. 시행)됨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안 제2조)
 -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해 부품안전인증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통관 전에 부품안전인증 면제신청서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제출하도록 함.

-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신청된 승강기안전부품이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임을 확인하면 부품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도록 함.

○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안 제3조)

-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에 대해 승강기안전인증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의 통관 전에 모델별 또는 승강기(모델이 정해지지 않은 승강기로 한정한다)별로 승강기안전인증 면제신청서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제출하도록 함.

-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신청된 승강기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임을 확인하면 승강기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도록 함.

○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부품안전인증 및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안 제5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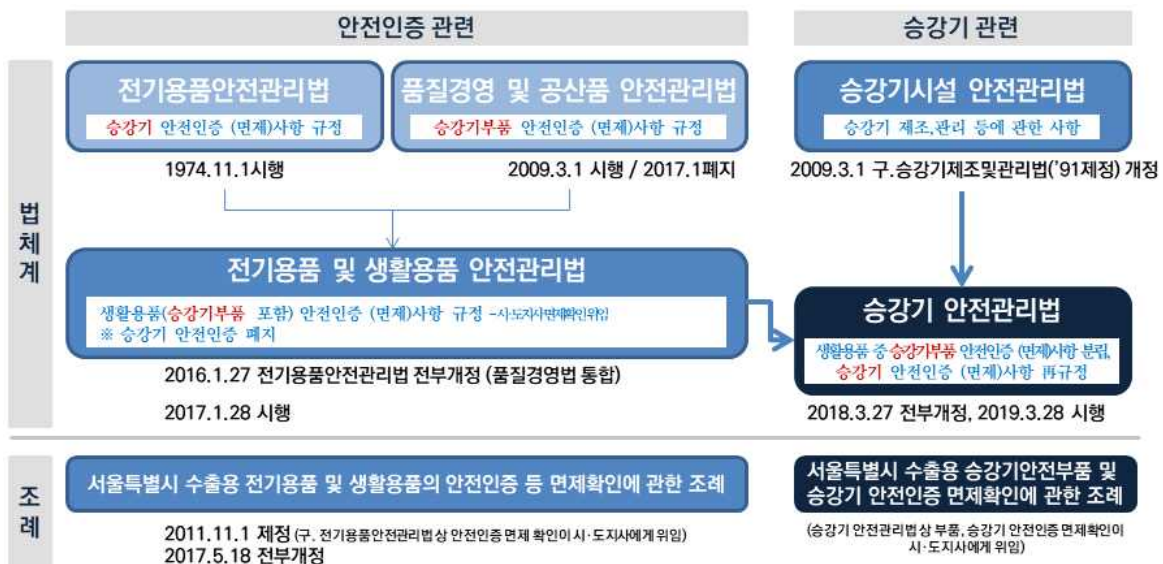
4.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전부개정(시행 '19.3.28)됨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와 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인증 면제확인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2020년 2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임.

▶ 법 개정 경위

-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은 그간 개별법에 따라 운영되던 승강기부품 안전인증 등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통일되고 종합적으로 운영하여 승강기 사고 등에 따른 위해(危害)로부터 승강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2018년 3월 27일 전부개정 되었음.

개정과 함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른 승강기부품 안전인증 등에 관한 사항과 舊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따른 승강기 안전인증에 관한 사항은 이 법으로 통합되었음.



〈조례안과 관련된 상위법 개정 흐름〉 ※ 국회 행안위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

▶ 조례 제정 경위

- 전부개정된 「승강기 안전관리법」(법률 제15526호)¹⁾에서는 승강기안전부품²⁾과 승강기³⁾의 제조·수입업자로 하여금 행정안

1)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2018.3.27. 전부개정, 2019.3.28. 시행).

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면서,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과 승강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안전부품과 승강기⁴⁾’에 대해서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이에 따라 이 조례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안전부품과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를 위해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됨.
- 참고로 법 시행 후 11개월이 지나서야 뒤늦게 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한 경위와 관련하여, 비록 법 시행 후 현재까지 서울시에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과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신청이 접수된 적은 없었다 하더라도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제때 마련하지 않을 경우 법 집행의 공백으로 지자체의 위법한 행정을 초래하거나 주요 정책에 대한 주민 체감도를 떨어트리

2) ‘승강기안전부품’이란 승강기 안전에 관련된 부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부품’을 의미하며(법 제11조제1항). 이는 법 시행령 [별표4]에 따라 엘리베이터, 휠체어리프트, 에스컬레이터에 사용되는 총 20개 부품으로 이루어짐. (붙임-1 참고)

3)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주차장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를 의미함(법 제2조제1호 및 시행령 제3조제1항).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안전부품’이란 다음 각 호를 의미하며(영 제18조제3항),
 1. 국내에서 판매·대여하지 않는 부품으로서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
 2. 수출한 승강기안전부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해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승강기안전부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란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설치하지 않는 승강기로서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를 의미함(영 제21조제3항).

는 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할 것임.

▶ **제정안 주요 내용**

-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되는데, 이에 기초하여 마련된 조례안은 총 5개 조문⁵⁾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조 문	주 요 내 용	비 고
법 제12조 (부품안전인증의 면제)제2호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조례안 제2조
법 제18조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제2호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에 대한 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조례안 제3조
법 제7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의 수수료 부과 1.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을 하려는 자 2. <u>제12조제2호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u> 3. <u>제18조제2호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u> 4. 제39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업 등록을 하려는 자	조례안 제4조 및 별표

- (안 제2조 및 제3조) 승강기부품이나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부품이나 승강기의 통관 전에 별지 서식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에 제출토록 하되, 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확인절차를 거쳐 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

5) 제1조(목적), 제2조(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제3조(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제4조(수수료), 제5조(보고)

게 발급하도록 규정하였음.

이는 법 제78조제2항과 시행령 제64조제2항에서 시·도지사의 부품안전인증 면제 확인 업무와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업무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

- (안 제4조) 부품안전인증 및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를 별표에서 정하도록 하였는데, 면제 확인 수수료는 1)현장심사 수수료(심사비용x2명x심사일)와 2)면제확인서 발급 신청 수수료(모델 1개당 해당 승강기 또는 승강기안전부품 1개 수입가격의 10퍼센트의 금액으로 하되, 5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를 합산한 금액으로 정하였음.
- (안 제5조) 안전인증 면제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공단으로 하여금 면제 확인 결과를 다음해 1월 31일까지 서울시장에게 보고토록 하는 것으로,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지도감독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됨.
- (다른 조례의 개정) 부칙에서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제2호바목에서 인용하고 있는 수수료징수 근거법령을 개정(「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2조제2항→「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2조)하였음. 참고로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이 조례안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유지관리업의 등록에 대한 수수료를 정하고 있음.

▶ 결론

- 이 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 내 수출용 승강기 및 승강기부품 관련업체들의 비용경감 및 시간 절약을 도모함으로써 승강기 관련 수출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담 당 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입법조사관 윤 은 정
연 락 처	02-2180-8208
이 메 일	urbanth@seoul.go.kr

【붙임-1】 관련 규정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주차장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구조나 용도 등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2. "승강기부품"이란 승강기를 구성하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말한다.
3. "제조"란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을 판매·대여하거나 설치할 목적으로 생산·조립하거나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① 승강기부품의 제조·수입업자는 승강기 안전에 관련된 승강기부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부품(이하 "승강기안전부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델(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고유한 명칭을 붙인 제품의 형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이하 "부품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제12조(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승강기안전부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2.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

제17조(승강기의 안전인증)

①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델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모델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승강기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승강기의 안전성에 관한 별도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행정안전부장은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2.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에 대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

제55조(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설립)

- ① 행정안전부장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여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업의 추진과 승강기 안전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57조(공단의 사업)

공단은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승강기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 개발
2. 승강기 안전에 관한 교육·홍보
3. 부품안전인증 및 승강기안전인증 업무의 대행
4.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업무의 대행
5. 승강기 기술인력의 양성 및 관리
6. 승강기 안전에 관한 정보의 종합관리와 자료의 수집·발간 및 제공
7. 승강기 안전에 관한 국제 교류 및 협력
8. 승강기 안전에 관한 진단 또는 컨설팅 등의 수탁업무
9.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업무
10. 그 밖에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76조(수수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을 하려는 자
2. 제12조제2호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3. 제18조제2호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제78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비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2. 제18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승강기의 종류)

①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1. **엘리베이터**: 일정한 수직로 또는 경사로를 따라 위·아래로 움직이는 운반구(運搬具)를 통해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운송시키는 설비
2. **에스컬레이터**: 일정한 경사로 또는 수평로를 따라 위·아래 또는 옆으로 움직이는 디딤판을 통해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운송시키는 설비
3. **휠체어리프트**: 일정한 수직로 또는 경사로를 따라 위·아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통해 휠체어에 탑승한 장애인 또는 그 밖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승강장으로 운송시키는 설비

제18조(부품안전인증의 면제)

③ 법 제1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안전부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안전부품을 말한다.

1. 국내에서 판매·대여하지 않는 부품으로서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
2. 수출한 승강기안전부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해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승강기안전부품

제21조(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③ 법 제18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란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설치하지 않는 승강기로서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를 말한다.

제62조(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의 범위)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의 범위**는 별표 12에 따른 금액 이하로 한다.

제64조(업무의 위탁)

② 시·도지사는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2조제2호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2. 법 제18조제2호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승강기안전부품(제16조 관련)

구 분	승강기안전부품
엘리베이터 또는 휠체어리프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문출발방지장치(Unintended car movement protection means) 2. 과속조절기(Overspeed governors) 3. 구동기(전동기 및 전자기계 브레이크를 포함한다) 4. 럽처밸브(rupture valve: 유압으로 구동되는 엘리베이터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밸브) 5. 비상통화장치 6. 상승과속방지장치(Ascending car overspeed protection means) 7. 완충기 8. 유량제한기(One-way restrictor) 9. 이동케이블 10. 제어반 11. 추락방지안전장치(Safety gear) 12. 출입문 잠금장치 13. 출입문 조립체 14. 매다는 장치(Suspension means)
에스컬레이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과속역행방지장치 2. 구동기(전동기 및 전자기계 브레이크를 포함한다) 3. 구동 체인 4. 디딤판 5. 디딤판 체인 6. 제어반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2]

시·도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의 범위(제62조 관련)

구분	수수료
1.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가. 등록 신청 수수료: 50,000원 나.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20,000원 다. 등록증 재발급 신청 수수료: 4,000원
2.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가. 면제확인 신청 수수료: 다음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1) 현장심사 수수료: 심사비용 × 2명 × 심사일 2) 면제확인서 발급 신청 수수료: 모델 1개당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1개 수입가격의 10퍼센트의 금액으로 하되, 5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나. 면제확인서 재발급 신청 수수료: 4,000원
3.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가. 면제확인 신청 수수료: 다음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1) 현장심사 수수료: 심사비용 × 2명 × 심사일 2) 면제확인서 발급 신청 수수료: 모델 1개당 해당 승강기 1개 수입가격의 10퍼센트의 금액으로 하되, 5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나. 면제확인서 재발급 신청 수수료: 4,000원
4. 유지관리업의 등록	가. 등록 신청 수수료: 50,000원 나.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20,000원 다. 등록증 재발급 신청 수수료: 4,000원

비고: 제2호가목1) 및 제3호가목1)에 따른 심사비용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붙임-2】 전국 시도별 조례 제정 현황 (‘20년 2월 현재)

연번	조례명	제정일자	비고 (소관 상임위)
1	서울특별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	-	도시계획관리위원회
2	부산광역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2019. 7. 10.	경제문화위원회
3	대구광역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 등에 관한 조례	2019. 7. 10.	기획행정위원회
4	광주광역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 조례	2019. 11. 1.	행정자치위원회
5	대전광역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2019. 10. 18.	산업건설위원회
6	세종특별자치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2019. 9. 30.	교육안전위원회
7	울산광역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2019. 11. 7.	행정자치위원회
8	경기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2019. 7. 16.	안전행정위원회
9	강원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2019. 7. 12.	기획행정위원회
10	충청북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2019. 7. 5.	산업경제위원회
11	충청남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2019. 2. 20.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12	전라북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2019. 6. 26.	문화건설안전위원회
13	전라남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2019. 10. 17.	안전건설소방위원회
14	경상북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2019. 7. 4.	건설소방위원회
15	경상남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2019. 9. 26.	건설소방위원회
16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2019. 7. 31.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7	인천광역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2019. 12. 30	기획행정위원회

【붙임-3】 전국 승강기 설치 현황 (출처: 승강기안전관리공단 집계자료)

지역	총수(대)	비율(%)	공동주택용(대)
강원	19,740	2.7	10,242
경기	190,705	26.5	111,386
경남	41,068	5.7	23,894
경북	28,893	4.0	15,830
광주	21,610	3.0	12,843
대구	30,548	4.2	16,547
대전	22,841	3.2	12,567
부산	47,234	6.6	24,789
서울	147,592	20.5	71,862
세종	5,864	0.8	3,752
울산	16,417	2.3	9,951
인천	38,286	5.3	18,526
전남	19,021	2.6	10,237
전북	22,032	3.1	12,289
제주	13,243	1.8	7,706
충남	31,451	4.4	18,160
충북	22,250	3.1	11,985
합계	718,795	100.0	392,566

주) 지역별 승강기 총수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를 합한 수치임.